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대학병원 등의 산학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38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 대학병원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이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의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 및 제36조의 2 등).

Ⅲ. 검토의견

1. 대학병원 정의 신설(안 제2조)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6. “산학협력”이란 <u>산업교육기관</u> 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대학병원”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말한다. 6. -----산업교육기관 및 대학병원----- ----- ----- ----- ---.

현행	개정안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9. “자회사(子會社)”란 <u>대학</u>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 <u>대학</u> , <u>대학병원</u> ----- ----- ----- -----.

현재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 또는 산학연협력을 하는 주체에는 병원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병원을 정의하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과 같이 대학병원을 정의하면서 산학연협력 주체에 대학병원을 추가하는 경우 대학병원이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게 되고,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권리설정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대학병원에는 사립대학의 부속병원 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독립된 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달리 사립대학의 부속병원은 사학법인의 정관을 통해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개정안은 대학병원에게 연구기관 등과 산학협력계약 체결, 산학협력단 설립·운영 등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학병원이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해당 병원의 연구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4 –

현행	개정안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u>산업교육기관의 장</u>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④ (생략)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u>대학의 장</u>이나 <u>대학의 설립·경영자</u>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u><신설></u>	② ----- ----- ----- ----- -. ----- --<u>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u>-----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대학의 장,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병원의 장</u>이----- ----- -----. <u>제24조의2(산업교육기관과 대학병원의 상호 협약)</u> ① <u>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주체 및 연구 수행, 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귀속 등에 대하여 상호 협약(이하 이 조에서 “상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u>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현행	개정안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u>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u>을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u>학교명</u>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	<u>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의 상호협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u> ③ <u>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이 체결한 상호협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u>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u>대학 또는 대학병원은 학교규칙(대학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의 정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병원-----</u>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학교명 또는 대학병원명</u>----- -----. ⑤ -----

현행	개정안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u>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u> <u><신설></u> 5. · 6. (생략) 7. 산업교육기관의 <u>교원과 학생의</u>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생략)	----- ----- ·. 1. ~ 12. (현행과 같음)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대학 또는 대학병원</u>----- ----- <u>4의2. 대학병원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u> 5. · 6. (현행과 같음) 7. -----<u>교직원과 학생, 대학병원의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직원</u>-----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u>대학</u>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 ② (생략)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u>대학의 장</u>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u>대학의 장</u>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생략)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u>대학</u>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수입) ① (생략) ② <u>대학의 설립·경영자</u>는 산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학 또는 대학병원</u>----- ----- -----.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u>----- ----- -----. ④ -----<u>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u>----- ---. -----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업연도) ----- -----<u>대학 또는 대학병원</u>-----. 제31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u>설립·경영자 또는</u>

현행	개정안
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대학병원의 장은</u>----- ----- ----- -----. ----- ----- -----.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3. <u>대학</u>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u>학생</u>에 대한 보상금 5. ~ 8. (생략) ② (생략)	제32조(지출)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u>대학 또는 대학병원</u>----- ----- 4. ----- ----- -----<u>학생, 대학병원의 의</u> <u>료인과 의료기사 등 직원</u>----- -----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 ② (생략) ③ <u>대학의 장</u>은 산학협력단의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u>

현행	개정안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u>그 대학의</u>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u>장</u> ----- ----- ----- <u>그 대학 또는 대학병원</u> <u>의</u> ----- -----.
④ <u>대학의 장</u> 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 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u>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u> <u>장</u> ----- ----- ----- -----.

현재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대학으로 대학병원은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¹⁾, 대학병원이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²⁾.

법 개정이 되는 경우 대학병원이 산학연협력을 통해 기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기존에 국립대학병원에 소속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된 교수 중 일부(비기금 임상교수, 진료교수, 연구교수 등)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연구원을 고용하지 못하거나 개인자격으로 고용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연구인력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것을 산학협력단을 설립함으로써 연구인력을 산학협력단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전문성과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학병원이 장기간의 임상실험과 연구, 진료 등으로 확보한 지식과 기술을 상용화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다시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환류할 수 있음은 물론 의료기술의 발전과 보급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3. 대학 산학협력단과 대학병원 산학협력단 간 업무조정(안 제24조제1항후단, 안 제24조의2, 안 제25조제7항 및 제8항)

개정안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치과)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겸직하는 산업교원을 연구책임자로 두는 경우의 산학협력계약의 체결주체를 원칙적으로 산업교육기관의 장(국립대학의 장 또는 서울대학교의 총장)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대학병원의 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주체 및 연구 수행, 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귀속 등에 대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병원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관련 대학(해당 대학병원이 설치된 국립대학)³⁾의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4조(산학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4조(산학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 ----- ----- ----- -----. 이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2조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3조에 따라 검직을 하고 있는 산업교원을 연구책임자로 두는 경우의 산학협력계약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장이 체결할 수 있다.
<신설>	제24조의2(산업교육기관과 대학병원의 상호 협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학협력계약의 체결주체 및

현행	개정안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u>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u> ②·③ (생략)	<u>연구 수행, 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귀속 등에 대하여 상호 협약(이하 이 조에서 “상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u> ② <u>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의 상호협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u> ③ <u>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이 체결한 상호협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u>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u>대학 또는 대학병원은 학교규칙(대학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의 정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병원-----</u> -----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u>학교명</u>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u>편입한다</u>. ⑥ (생략) <u><신설></u> <u><신설></u>	④ ----- -<u>학교명 또는 대학병원명</u>----- -----. ⑤ ----- ----- -----, ----- ----- ----- ----- ----- ----- -----<u>편입하</u> <u>고, 대학병원에 설립한 산학협</u> <u>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u> <u>산은 해당 대학병원의 회계에</u> <u>귀속한다.</u>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에는 그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관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대학병원의 산

현행	개정안
	<u>학협력단 설립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과 서울대학교에 속한 교원은 대응되는 대학(치과)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사업 등을 위해 겸직할 수 있는데, 해당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체결 주체를 국립대학의 장 또는 해당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단장으로 할지 대학병원의 장 또는 해당 대학병원 산학협력단 단장으로 할지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우선적인 체결주체가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상되는 분쟁에 대해 대비하고 있음.

또한, 대학과 대학병원은 협력의 과정에서 인력, 장비, 지식·기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그에 대한 소유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지식·기술 등을 상업화에 활용하여 새로이 창출되는 권리를 어디에 귀속시킬지 등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 별로 설립한다.

음을 명시하여 권리 귀속 등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음.

4.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겸직 등(안 제36조의2, 제36조의5, 제36조의6, 제36조의7)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공동 설립 주체에 대학병원을 추가하고, 대학병원이 개입된 기술지주회사가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며, 대학병원의 의료인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 ----- ----- ----- ----- ----- -----.
1. 다른 <u>대학</u> 의 산학협력단	1. ----- <u>대학 또는 대학병원</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른 업무와 <u>대학</u>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u>대학</u>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u>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u>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u>해당 대학 또는 대학병원</u>----- --. ----- -----<u>해당 대학 또는 대학병원</u>----- -----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u>대학의 교직원, 대학병원의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u>----- ----- ----- ----- -----. -----. ② (현행과 같음)

법 개정이 되는 경우 대학병원이 보유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의 상용화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가 「의료법」상의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도록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에는 대학병원의 의료인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5. 협력연구소 설치 및 인력·장비 공동활용(안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

개정안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및 행정재산 처분금지 조항⁵⁾에도 불구하고 대학병

-
- 4)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 5)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

원의 부지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병원의 인력 및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u>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u>	제37조(협력연구소) ① ----- <u>설립·경영자 또는 대학병원의 장은</u> ----- ----- ----- ----- ----- ----- <u>교지(校地) 또는 대학병원의 부지</u> ----- -----

재산”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연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현행	개정안
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u>교지</u>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u>대학의 설립·경영자</u>는 제1항에 따라 <u>대학의 교지</u>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u>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u>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u>교지</u>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u>설립·경영자</u>에게 기부하거나 <u>교지</u>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 ----- ----- -----<u>교지 또는 대학병원 부지</u>----- ----- ----- ----- -----. ② <u>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병원의 장</u>은----- <u>대학의 교지 또는 대학병원의 부지</u>----- ----<u>대학 또는 대학병원과</u>----- ----- ----- -----. ③ -----<u>교지 또는 부지</u>----- ----- ----- ----- ----- -----<u>설립·경영자 및 대학병원의 장</u>-----<u>교지 또는 부지</u>-----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생략)	제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 ----- ----- 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은- -----산업교육기관, 대학병원,-- ----- ----- ----- ----- -----.
제39조(산학연협력 추진을 위한	제39조(산학연협력 추진을 위한

현행	개정안
지원 등)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u>산업교육기관</u>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u>산업교육기관</u>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u>산업교육기관</u>,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u>----- -----<u>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u>----- ----- ----- ----- ----- -----.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산업교육기관, 대학병원,</u>----- ----- ----- -----. ③ (현행과 같음)

기존에도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및 행정재산 처분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부지에 협력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었으며, 대학병원을 산학연계약 체결 및 산학협력단 설립 주체로 포함시키는 이상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병원의 인력 및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활용하게 함에 있어 대학병원을 달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통계작성(안 제39조, 제39조의2)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병원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대학병원이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대학병원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9조(산학연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등) ① (생략)	제39조(산학연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u>산업교육기관</u> 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u>산업교육기관</u> 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u>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u> ----- ----- <u>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u> ----- ----- ----- ----- ----- -----.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

현행	개정안
성) ① (생략)	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u>산업교육기관</u> ,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u>산업교육기관, 대학병원,</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병원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의 상당 부분을 대학병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대학병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7. 관련기관 의견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과 달리 국립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되어 병원소속 의료진들이 관련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 소속 의료진들의 연구성과물 사업화에 한계가 있는바, 병원 산학협력단 설치를 통해 의료기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연구에 재투자하여 의학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병원에 별도 산학협력단을 설치 시 기능이 중복되고, 기존 산학협력단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서울대학교는 제24조제1항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겸직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산학연협력계약을 대학병원의 장이 체결하는 상황에 한하여 제24조의2에 따른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북대학교는 제24조의2에 따라 대학병원과 대학 간 상호협약 체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도한 행정절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